

96. 기업과 장애인의 상생발전과 지원 유도

▶ 신규여부 **신규** 계속 ▶ 사업시기 **임기내** 임기후 ▶ 예산투자 예산 **비예산** ▶ 사업주체 **인천시** 국가 민간

○ 정책목표

- 기업과 장애인이 상생발전하도록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* 활성화

* (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)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(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고용)이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)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

○ 정책개요

- (사업내용) 사회적경제기업*에게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장애인 표준사업장 등) 인증을 유도하고, 납부의무 기업과 협력.연계 지원
- 연계고용 사업장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·육성, 경제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설명회 개최 등

<참고>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제도 운영 현황 (출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)
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-------|--|
| 사업주체 | 한국장애인고용공단(부담금 부과, 부담금 감면 인정) * 부담금은 기금으로 조성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목적에 활용 |
| 운영절차 | <pre> graph LR A[부담금 납부 사업주] -- "① 연계고용 계약 체결(1년 이상)" --> B[연계고용대상 사업장] B -- "② 보수금역 지급" --> A C[공단] -- "③ 부담금 감면 인정" --> A D[생산물 납품 등] --> A </pre> <p>연계고용 계약 절차</p> |
| 인천시 운영실적 | ▲ 장애인고용의무사업장 : 1,663개 /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사업장 : 601개 |
| 기 타 | ▲ 단순히 해당기업이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표준사업장 등) 생산제품 구매만으로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없고, 계약체결을 통해 해당기업 로고 등 맞춤형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에 부담금 감면이 가능한 제도적 한계가 있음 |

○ 추진실적

- 2022. 8. : 사회적경제 정책간담회 개최(주제 : 새로운 변화 ESG와 사회적경제)
- 2022. 10. : 사회적경제 정책연구회 개최(주제 : 사회서비스분야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역할)

○ 향후 추진계획

● 추진일정

| 세부 추진상황 | 2022년 | | | | 2023년 | | | | 2024년 | | | | 2025년 | | | | 2026년 | | | |
|--|-------|---|---|---|-------|---|---|---|-------|---|---|---|-------|---|---|---|-------|---|---|---|
| | 1 | 2 | 3 | 4 | 1 | 2 | 3 | 4 | 1 | 2 | 3 | 4 | 1 | 2 | 3 | 4 | 1 | 2 | 3 | 4 |
| 추진기반 구축 · 유관기관 업무협의, 추진계획 수립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제도 활성화 · 연계고용 감면제도 홍보(설명회 개최 등) · 활성화방안 논의·추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● 공약달성 확인지표

| 확인지표 | 단위 | 건/목표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 2025년 | 2026년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연계고용 감면제도 홍보(설명회 개최) | 회 | 8 | | 2 | 2 | 2 | 2 |

● 재정투자 : 비예산

● 타기관 협조

- (장애인고용공단)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 홍보 협력
- (고용노동부)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완화 및 연계고용부담금 활성화 방안 협의

○ 미래의 모습(기대효과)

- 기업의 장애인고용 부담 완화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

